원타임 취급업자 자동차보험

[가입대상]

자동차취급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제1조(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가지급금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 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 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2. 단기요율 :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말합니다.
- 3. 마약 또는 약물 등 :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4. 무면허운전(조종):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거나 운전(조종)이 금지된 상황에서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5. 무보험자동차 :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합니다.

- 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 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 다.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II」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이고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II」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는 그 각각의 자동차
- 라.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 (「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이동장치는 제외)
- 6.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 가. 부분품 :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대로 부

착되어 자동차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나. 부속품: 자동차에 정착 또는 장비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자동차 실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합니다.

-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 (2) 법령에 의해 자동차에 정착하거나 장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
- (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 (4) 부속기계장치
- 다. 부속기계장치 :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 등 자동차등록증상 그용도가 특정한 자동차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기계장치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 ①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 ② 장비 : 자동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또는 법령에 따라 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 ③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지급을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와 통행료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송수신장치(예 : 하이패스 단말기)
- 7. 운전(조종): 「도로교통법」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제148조(벌칙) 및 제148조의2(벌칙)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8. 운행: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조 제2호)

[용어풀이]

- '운전'과 '운행'의 차이 : '운전'이라 함은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자배법상의'운행'은 도로교통법의 '운전'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 9. 음주운전(조종): 「도로교통법」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10.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 11. 자동차보유자: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조 제3호)
- 12. 자동차 취급업자 :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자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 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를 말합니다.
- 13. 피보험자: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가. 기명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 나. 친족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 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 '친족'이란 혈연관계에 있거나 혼인으로 맺어진 사람으로서 민법 제 777조에 규정한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합니다.
- 다. 승낙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라. 사용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 마. 운전피보험자: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를 말함)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 14. 피보험자동차: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 15.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 가. 피보험자의 부모: 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를 말합니다.
- 나. 피보험자의 배우자: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 다. 피보험자 자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 16. 휴대품 및 소지품
- 가. 휴대품: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

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나. 소지품: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용어풀이]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 예)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 방, 골프채 등
- 17.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8. 보험가액

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 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나. 보험계약 체결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제2조(원타임 취급업자 자동차보험의 구성)

- 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원타임 취급업자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5가지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② 보험계약자는 이들 5가지 보장종목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③ 각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1. 배상책임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가. 「대인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보상
나.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2.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담보종목	보상하는 내용
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자동차의
「자기신체사고」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나. 「무보험자동차 에 의한 상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를 보
「자기차량손해」	상

④ 자동차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예시>

납입할 보험료 = 기본 보험료 × 특약 요율등

구 분	내 용
기본보험료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 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특약요율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 등 가입시에 적용하는 요율

제2편 원타임 취급업자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제3조(보상하는 손해)

- ① 「대인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4조(피보험자)

「대인배상」과「대물배상」에서의 피보험자는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 6.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에 사람 또는 물건을 운송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7.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 8. 피보험자동차의 운송을 위하여 선박에 싣거나 내릴 때 또는 선박에 탑재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9.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무면허운전자가 절취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 10. 피보험자동차를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기명피보험자 와 기명피보험자의 동업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2.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3. 배상책임 의무가 있는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4.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 5.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이 멸실, 파손, 오손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가.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동업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나. 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다. 배상책임 의무가 있는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라. 피보험자의 고용주
- 2.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 3.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 4.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 ④ 제1항 제2호와 관련해서 보험회사가 제6조(피보험자 개별적용)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2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6조(피보험자 개별적용)

- ① 이 장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1호, 제6호, 제10호를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7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하는 보험금의 한도가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제7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대인배상」,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보험증권

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지급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비용 - 공제액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용어풀이]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 아하며, 이때에 필요하거나 유익한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증거(블랙박스 영상 등)의 확보, 소송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 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용어풀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약관 제43조(사고발생 시 의무)에 따르는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예시> 사고 증거(블랙박스 영상 등)의 확보, 소송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

- ④ 제1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1. 「대인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
- 2. 「대물배상」: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 ⑤ 제1항의 「대물배상」의 경우 '공제액'은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8조(음주운전,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시의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1. 「대인배상 I」: 1 사고당 음주운전 1,000만원, 무면허운전 300만원,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 300만원
- 2. 「대인배상Ⅱ」: 1 사고당 1억원
- 3. 「대물배상」
-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보험가입금액 이하 손해 : 1사고당 음주운전 500만원, 무면허운전 100만원,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위반 100만원
-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 : 1사고당 5,000만원
- 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위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의무보험이 가입된 보험자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사고 부담금에 대한 지급책임을 지는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대한 동 사고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9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일 때에 한합니다.
-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 나. 화재 또는 폭발
-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제10조(피보험자)

「자기신체사고」에서의 피보험자는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1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통상의 운전대행 과정을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2.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3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 5.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6.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7.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8.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 9.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에 생긴 손해.
- 10.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11. 피보험자동차가 기명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리스차량은 리스이용자가 소유한 자동차로 간주하고, 장기렌터카는 임차인이 소유한 자동차로 간주합니다)에 해당되는 경우 12.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제12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2. 부상: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별표.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상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상해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3. 후유장애: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에는 '별표.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하도로 합니다.

제13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자기신체사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자기신체사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보험금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

- 2. 위 '제 1호'의 '실제손해액'은 보통약관 '별표1.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 미적용 금액을 말합니다.
- 3. 위 '제 1호'의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①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②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 4. 위 '제 1호'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①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 및 「대인배상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②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 5. 다만, 위 '제 4호'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 지출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

유장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6.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14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이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 ① 무보험자동차: 제1조(용어정의) 제5호
- ② '상해'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③ '배상의무자'라 함은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15조(피보험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의 피보험자는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16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1.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2.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 6.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

한 때에 생긴 손해.

- 7.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 8.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9.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 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
- 10.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운전을 허락받지 않은 경우 또는 장기렌터카의 임차인 으로부터 운전을 허락받지 않은 경우
- 11. 피보험자동차가 기명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리스차량은 리스이용자가 소유한 자동차로 간주하고, 장기렌터카는 임차인이 소유한 자동차로 간주합니다)에 해당되는 경우 [용어풀이]
- '배상의무자'라 함은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 17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다만, 「도로 교통법」에 의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손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비용 - 공제

- ③ 위 '제 2항'의 '지급보험금'은 피보험자 1인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④ 위 '제 2항'의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 ⑤ 위 '제 2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1. 「대인배상 I」(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2.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3. 피보험자가 탑승 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4.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 5.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 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제3절 자기차량손해

제18조(보상하는 손해)

- ①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2.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 3.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 4. 경미한 손상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 ① 위 '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합니다.
- 1. 다른 자동차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 3.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

- 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경미한 손상'이라 함은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

제19조(피보험자)

「자기차량손해」에서의 피보험자는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20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 5.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에 사람 또는 물건을 운송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6.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 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 8.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 9.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 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 11. 피보험자동차를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 12. 피보험자동차를 운송을 위하여 선박에 싣거나 내릴 때, 또는 선박에 탑재하여 운송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13.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 가.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
- 나.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
- 다.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로 인한 손해
- 14.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 약물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 15. 자동차의 제작상 또는 구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 16.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운전을 허락받지 않은 경우 또는 장기렌터카의 임차인 으로부터 운전을 허락받지 않은 경우
- 17. 피보험자동차가 기명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리스차량은 리스이용자가 소유한 자동차로 간주하고, 장기렌터카는 임차인이 소유한 자동차로 간주합니다)에 해당되는 경우 [용어풀이]
- ①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나 튜브를 훼손하거나 파손한 사고로, 경찰관서를 통하여 가해자(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의 신원이 확인된 사고를 말합니다.
- ② '마약·약물운전'이라 함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1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1.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지급보험금 = 피보험자동차에생긴 손해액 + 비용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 2. 제1항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나.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 다.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 라. 피보험자동차가 제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 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합니다.
- 3. 제1항의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 4. 제1항의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 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5. 피보험자동차의 일방과실사고가 아닌 경우로,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또는 상대 방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피보험자동차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가 확정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피보험자는 이 금액을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가. 보험회사는 먼저 지급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범위에서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손해배 상책임액이 보험회사가 구상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 피보험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나. 보험회사는 먼저 지급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에 대하여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
- 입한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을 받은 경우 '자기부담금 차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최소 자기부담금 이상으로 합니다.
- 자기부담금차액 = 피보험자가 이미 부담한 자기부담금-실제 손해액에서 해당 구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전제로 산정된 자기부담금
- 6.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을 대신할수 있습니다.
- 7.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① '보험가액'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

에는 사고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② '전부손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제22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장종목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 「대인배상」, 「대물배상」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 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2.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 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 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4. 「자기차량손해」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동차가 회수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보험자동차의 반환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제23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③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할 때에는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⑥ 「대인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그밖의 원인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피해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그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제24조(제출 서류)

피보험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시필요 서류 등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 손해
1. 보험금 청구서	0	0	0	0	0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0	0	0	0	0
3.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0	0		0	
4.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				0	0
5.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0	
6.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0	
7.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0	
8.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전손사고 후 이전매각 시 이전서류					0
전손사고 후 폐차시 폐차인수증명서					0
9. 그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 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 개시 전 자동차 점검 · 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 개시 전 자동 차점검 · 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 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 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0	0	0	0	0

제25조(가지급금의 지급)

- ①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⑤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⑥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⑦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24조(제출서류)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제26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제27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 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하며,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⑤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4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구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⑥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 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 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⑦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액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정기금의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 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제28조(제출 서류)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 구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필요 서류 등	대인배상	대물배상
1.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0	0
2. 손해배상청구서	0	0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0	0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 전자동차점 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개시 전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0	Ο

제29조(가지급금의 지급)

- ①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 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 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⑥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⑦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28조(제출서류)에 정한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제30조(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분담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있는 경우: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손해액 ×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 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 「대물배상」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7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지급합니다.

제31조(보험회사의 대위)

- 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하여 갖는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③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제1항 또는 2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2조(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①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②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용어풀이]

- ① '곤궁'이라 함은 처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난처하고 딱한 상황을 말합니다.
- ② '경솔'이라 함은 말이나 행동이 조심성 없이 가벼운 상태를 말합니다.

제33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음) 내에서 제1항의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제34조(공탁금의 대출)

보험회사가 제33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정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의 회수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용어풀이]

'공탁금'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금전·유가증권·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는 금액을 말합니다. 공탁을 하는 경우로는 채무를 갚으려고 하나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혹은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제35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또는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함)을 지급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③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회사는 제39조(보험기간)의 규정에 따라 보험기간의 첫 날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이후 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

제36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② 통신판매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1.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사이버몰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이를 읽거나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약관을 드리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2.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이나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광기록매체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전해 드릴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하는 통신판매 보험계약에서는 확인서를 제공하여 청약서 부본을 드리는 것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은 경우

-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 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3.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면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 ① '광기록매체'라 함은 통상 CD, DVD 등과 같이, 레이저광을 이용하여 기록·재생하는 매체를 지칭합니다.
- ②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란,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 제한사유 등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보험회사의 별도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약관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③ '통신판매 보험계약'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 ④ 자필서명에는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을 포함합니다.

제37조(보험안내자료의 효력)

보험회사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제작·사용한 보험안내자료(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8조(청약 철회)

-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린 것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1.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 2.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 3.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 4.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

[용어풀이]

- '전문보험계약자'라 함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과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업법」 제2조 제1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④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 ⑤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회사가 제4항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39조(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입니다.

제40조(사고발생지역)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장종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41조(계약 전 알릴 의무)

-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 대리인은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1.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및 특별약관

기재사항

- 2.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사실(자동차의 탁송대수, 판매 또는 전시실적, 회사 규모, 종사원의 수 등에 의하여 보험료가 정하여지는 계약의 경우 이와 관련한 자료를 포함)
- ②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48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2조(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48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및 특별약관 기재사항이 변동된 사실
- 2.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사실(자동차의 탁송대수, 판매 또는 전시실적, 회사 규모, 종사원의 수 등에 의하여 보험료가 정하여지는 계약의 경우 이와 관련한 자료를 포함)
-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43조(사고발생 시 의무)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2.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 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 3.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는 보험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4.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5.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6.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제44조(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보험계약자.
- 2.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 등 그 밖의 계약의 내용
-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는 사망시점에서의 법정상속인에게 이전합니다.

제45조(보험계약의 취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을 증명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6조(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47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해제)

- ①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다른 사람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해제할 수있습니다.

제48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 ①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41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 가.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 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을 때
- 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한 때라.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함)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마.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 관련이 없을 때 또

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않은 때

- 2.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제42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을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 3. 보험회사가 제41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항, 제42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 가. 보험회사가 제41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이 지난 경우
- 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제42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하는 사실을 통지받은 후 1월이 지난 경우
- 4.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발생한 경우
-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의 가입내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49조(보험료의 환급 등)

- ①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보험료와 변경 후 보험료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 ②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보험료가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어 보험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이자(납입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에게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적정보험료

- 를 초과한 금액만 돌려드립니다.
-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제36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4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 상실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 ④ 제3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 2. 보험회사가 제45조(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제48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 ⑤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 ⑥ 이 약관에 의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드리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드립니다.
- ⑦ 보험회사가 제6항의 반환기일이 지난 후 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이자의 계산에 관해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50조(약관의 해석)

- ① 보험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51조(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 ① 보험회사는 제43조(사고발생 시 의무) 제1항 제2호 나목, 다목의 피해자, 가해자 및 증인의 개인정보를 보험사고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호, 형식, 연식
-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보장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보험료 할인·할증에 관한 사항, 특별약관의 가입사항, 계약해지 시 그 내용 및 사유
-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제52조(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제53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54조(보험사기행위 금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55조(분쟁의 조정)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그 밖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 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56조(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57조(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별표 1>의 나이(연령)는 만 나이(연령)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 사 망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항 목	지급 기준
1. 장례비	지급액: 5,000,000원
2. 위자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2)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름.
2 おおからめ	
3.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
	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 다만, 나.
	(4) 현역병 등 군 복무 해당자의 잔여 또는 예정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본인의 생활비를 공제하지 않음.
	┌── 〈산식〉 ──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
	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항 목	지급 기준
	(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용어풀이) ①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함. ②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 ③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
	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거나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함.
	나) 사업소득자 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산식〉 [연간수입액-주요경비-(연간수입액×기준경비율)-제세공과금]×노 무기여율×투자비율

항 목	지급 기준
	(주) 1.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 증명된 경비를 공
	제함.
	2.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그비율을 적용함.
	3. 투자비율은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로 함.
	4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함.
	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①
	의 산식에 따르지 않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할중인도 사 임임을 인정임.
	(용어풀이〉
	① 이 보험계약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함.
	② 이 보험계약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 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중 공사부문은 보통인부, 제조부문은 단순노 무종사워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구·장사천의 담급을 작용하여 아내와 같이 신경함.
	- 〈삼식〉
	* 월 임금 산출 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항 목	지급 기준
	다) 그 밖의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증명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
	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15
	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 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
	① 기술직 종사자가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라 함
	은 자격증, 노무비 지급확인서 등의 입증 서류를 보험회사로 제출한
	것을 말함.
	2)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다) 그 밖의 유직자 일용근로자 임금

항 목	지급 기준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이내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경우에 한함. 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19세에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19세 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
	(2) 가사종사자: 일용근로자 임금
	(3) 무직자(학생 포함): 일용근로자 임금
	(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 (가) 현역병 등 군 복무자(급여소득자는 제외) :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본인 소득(단, 병역법에 따른 잔여 복무기간에 대해서만 적용) (나) 현역병 등 군 복무예정자 :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현역병 육군 기준 소득(단, 병역법에 따른 예정 복무기간에 대해서만 적용)
	○ (용어풀이〉 ① '현역병 등'이라 함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의무소방원·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을 말함 ② '병역법'에 따른 잔여 또는 예정 복무기간'이라 함은 현역병은 병역법 제19조에 따른 기간. 의무소방원·의무경찰은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기간.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제42조에 따른 기간에 대해 사고발생일 기준으로 계산한 기간을 말함 ③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본인 또는 현역병 육군 기준 소득'이라 함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에 따른 병 계급별 월 지급액의 산술평균을 말함

항 목	지급 기준
	(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 (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과 증명 곤란한 소득 이 있는 때 혹은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6) 외국인 (가) 유직자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증명이 가능한 자: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증명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② 위 ① 이외의 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일용근로자 임금
	다. 생활비율: 1/3
	라.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2) 피해자가 사망 당시(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일) 62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에 의하되,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 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항 목	지급 기준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					
	피해자의 나이 취업가능월수					
	62세부터 67세 미만	36월				
	67세부터 76세 미만	24월				
	76세 이상 12월					

- (3) 취업가능연한이 사회통념상 65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연한 이후 65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 (4) 취업시기는 19세로 함
- (5) 외국인
- (가) 적법한 일시체류자^(*1)인 경우 생활 본거지인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적법한 일시체류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한 경우 아래 (다)를 적용함.
- (나) 적법한 취업활동자^(*2)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체류기간 동안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적법한 체류기간 종료 후에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사고 당시 남은 적법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고일부터 3년간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 (다) 그 밖의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그 후부터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 (*1) '적법한 일시체류자'라 함은 국내 입국허가를 득하였으나 취업활동 의 허가를 얻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 (*2) '적법한 취업활동자'라 함은 국내 취업활동 허가를 얻은 자를 말합니다.

항 목	지급 기준		
	마. 라이프니츠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복리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1 1 1+i (1+i)² i=5/12%, n=취업가능월수		

나. 부 상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 I」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071 C 1 1 1 0 C C C C C C C C C C C C C C				
항 목	지급 기준			
1. 적극손해	가. 구조수색비: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나. 치료관계비: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 (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항 목	지급 기준							
	(3) 치아	(3) 치아보철비: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또는 임플란트(실제 시						
	술한 경우	술한 경우로 1치당 1회에 한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는 파괴되	어 사용할	할 수 없게	ll 된 경-	우에는 원
	상회복에	소요되는	- 비용					
2. 위자료	가. 청구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	, – ,	임보험 성	}해구분에	따라 다	음과 같이]	
							(단위	: 만원)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1	200	5	75	9	25	13	15
	2	176	6	50	10	20	14	15
	3	152	7	40	11	20		
	4	128	8	30	12	15		
	다.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 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함.							
3. 휴업손해	가. 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 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							
	○ (용어풀이) ①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를 말함.							
	_ 〈산·	식〉 —		1일 수약	입감소액>	〈휴업일수	85 100	_

항 목	지급 기준			
	나. 휴업일수의 산정			
	(1) 휴업일수의 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함.			
	(2) 사고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취업가능연한을 초과한 경우,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위 가.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취업가능연한: 65세를 기준으로 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함.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1) 유직자 (가)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 감소액을 산정함.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 감소액으로 함.			
	(2) 가사종사자 (가)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 (용어풀이) ① 가사종사자라 함은 사고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민등록 관계 서류와 세법상 관계서류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증명한 사람을 말함.			
	(3) 무직자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항 목	지급 기준					
	(4)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과 동일				
	(5) 01701					
	(5)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고 도이				
4. 간병비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기 6 년				
1. 6.0						
	나. 인정 대상					
	(1)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				
	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에 마다 기에드크 1 트크스 기에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3)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용 및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					
	┌ 〈용어풀이〉					
	①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함은 진단서, 진료기록, 입원기록, 가족관계					
	증명서 등 보험회사가 상해등급과 신분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물범.					
	다. 지급 기준					
	(1) 위 인정대상 (1)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2) 위 인정대상 (2)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60일을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2) 기범이 이 9 1 2 1 2 2 기준이 기관					
	(3)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4) 위 (1)과 (2)의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상해등급	인정일수				
	1급 ~ 2급 60일					
	3급 ~ 4급 30일					
	5급 15일					

항 목	지급 기준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위 1. 내지 4. 외에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가.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 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 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에 한함)
	나.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다. 후유장애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 I」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 목	지급 기준
1. 위자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나) 후유장애 판정 당시 ^(*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다) 상기 (가), (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약관에 따른 가정간호
	비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적용함.
	① 후유장애 판정 당시 ^(*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② 후유장애 판정 당시 ^(*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1) 후유장애 판정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최초 후유장애 판정 시점
	의 피해자 연령을 기준으로 후유장애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항 목		지급 기준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단위 : %, 만원)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45% 이상 50% 미만	400
	35% 이상 45% 미만	240
	27% 이상 35% 미만	200
	20% 이상 27%미만	160
	14% 이상 20% 미만	120
	9% 이상 14% 미만	100
	5% 이상 9% 미만	80
	0 초과 5% 미만	50
2. 상실수익액	함. 다만, 부상 위자료 해당의 위자료로 지급함. 가. 산정방법: 피해자가 노동 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지급하는 경우에는 후유장애 위자료를 지급 택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후유장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치아보철로 급하지 아니함.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	상실률×(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 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가) 산정대상기간	

항 목	지급 기준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노동능력 상실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 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
	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2) 가사중사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3) 무직자(학생포함)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6)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다.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 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 목 전문의가 진단·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그 판정 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 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라. 노동능력상실기간 사망한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마. 라이프니츠 계수 사망한 경우와 동일

항 목	지급 기준
3. 가정간호비	가. 인정 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 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 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 다른 사 람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나. 지급 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 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항목	지급 기준
1. 수리비용	가. 지급대상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수리비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다만, 경미한 손상 ^(*1) 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
	(*1)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
	(2) 열처리 도장료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연식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
	액 (3) 한도 *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함. 다만,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0%를 한도로 함 (가) 내용연수(*1)가 지난 경우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화물자동차
	(*1)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에서 정하는 내용연수를 말합니다.
2. 교환가액	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 차하는 경우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2)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

항 목	지급 기준
3. 대차료	가. 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1)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2).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차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3)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1)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2)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
	니다. (*3) "규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기준(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를 말합니다. (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1)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하며,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또는 밴형 화물자동차 및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 (*1)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차종을 말합니다.

항 목	지급 기준
	(2)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가)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위(1)-(가) 단서에 따라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의 35% 상당액 (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5% 상당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 ^(*1) 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1) "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을 말합니다.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10일
4. 휴차료	가.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간을 곱한 금액

항 목	지급 기준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가) 수리를 위해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10일
5. 영업손실	가. 지급대상 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 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6.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다. 인정기간 (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가. 지급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별표 3> 자기신체사고 지급 기준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ठ ण ठ घ	1,500만원
 1급	1,500만원
2급	800만원
3급	750만원
4급	700만원
5급	500만원
6급	400만원
7급	250만원
8급	180만원
9급	140만원
10급	120만원
11급	100만원
12급	60만원
13급	40만원
14급	20만원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	보험가입금액
ॅð ॅी <del>ठ</del> ⊨	3,000만원
- 1급	3,000만원
2급	2,700만원
3급	2,400만원
4급	2,100만원
5급	1,800만원
6급	1,500만원
7급	1,200만원
8급	900만원
9급	720만원
10급	540만원
11급	420만원
12급	300만원
13급	180만원
14급	120만원

주)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구분에 의함

## <별표 4> 과실상계 등

/ 5 元 4 / 1 5	0/11 0
항 목	지급 기준
1. 과실상계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 I」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
	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
	(3) 「대인배상」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
	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 I 」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함.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
	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2. 손익상계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
	급함.
3. 동승자에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는 <별표 5>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대한 감액	에 따라 감액함.

항 목	지급 기준
4. 기왕증	가. 기왕증 ^(*1) 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 (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함.
	나. 기왕증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함. 다만, 그 판정에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 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1) '기왕증'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으로 특이체질 및 병적 소인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별표 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 1.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및 운행목적	감액비율 ^(*1)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 동승	100%
음주운전자의 차량 동승	40%
동승자의 요청 동승	30%
상호 의논합의 동승	20%
운전자의 권유 동승	10%
운전자의 강요 동승	0%

(*1) 다만,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한 경우에는 위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 수정요소

수정요소	수정비율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10~20%

##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 제1장 대리운전 1회보장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보험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리운전을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로부터 대리운전 과정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할 때까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단, 보험회사가 정하는 대리운전 1회인증절차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위 제1항의 손해 중 대인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 <용어풀이>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대리운전이란 대리운전업자(개인인 대리운전자 포함)가 자동차를 사용할 정당한 권리를 가진 의뢰인(자동차소유자 포함)의 요청에 따라 의뢰인이 동승한 상태에서 요청하는 목적지까지 그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고 그 대가로 금액을 수수하는 운전서비스를 말하며, 다음의 탁송운전과 발렛운전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동승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의뢰인의 요청 목적, 의뢰인이 해당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이유 등에서 판단할 때, 통상의 대리운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보상해 드립니다.
- 1. 탁송운전 : 자동차를 사용할 정당한 권리를 가진 의뢰인(자동차소유자 포함)의 요청에 따라 의뢰인이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자동차를 의뢰인이 요청하는 다른 장소로 운전하여 운송해 주고 그 대가로 금액을 수수하는 운전서비스
- 2. 발렛운전: 자동차를 사용할 정당한 권리를 가진 의뢰인(자동차소유자 포함)의 요청에 따라 의뢰인이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자동차를 지정된 장소로 입차하여 대리주차해주거나 주차장소로부터 출차 하여 의뢰인에게 반납해 주고 그 대가로 금액을 수수하는 운전서비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대리운전 1회 인증절차란 피보험자가 대리운전 출발 시 보험회사에서 정하는 운행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전송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인증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 제2조(피보험자)

보통약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 차량손해」에서 피보험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기명피보험자"라 함)
- 2.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증권 또는 운전자 명세서에 기재된 운전자
- 3. 위 제1호 및 제2호의 피보험자 중 자동차정비, 주차, 급유, 세차, 자동차판매, 자동차 탁송 등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위탁받아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 자로 보지 않습니다.
- 4. 기명피보험자(법인의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가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자 명세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라 함은, 의뢰인으로부터 대리운전 의뢰를 받은 당사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대리운전업 영위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제3조(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가 대리운전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수탁 받아 관리중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16인승이하), 화물자동차(1톤 이하)를 말합니다.

## 제4조 (피보험자의 변경)

보험기간중 이 특별약관 제2조(피보험자) 제2호의 운전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알리고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제5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외에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통상의 대리운전과정을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2. 이 특별약관 제2조(피보험자)에서 정한 사람 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3. 피보험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 4. 피보험자 또는 운전자의 가족이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용어풀이>

- 이 약관에서 피보험자 또는 운전자의 가족이라 함은
- ① 피보험자 또는 운전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 ② 피보험자 또는 운전자의 배우자의 부모 및 양부모, 계부모
- ③ 피보험자 또는 운전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 ④ 피보험자 또는 운전자의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 ⑤ 피보험자 또는 운전자의 며느리(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및
- ⑥ 피보험자 또는 운전자의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를 말합니다.

#### 제6조(대리운전 현황의 통보)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는 대리운전 현황을 보험회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전자적인 정보로서 통보해야 합니다.

####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는 대리운전 현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료 정산 및 보상 등 계약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로서,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의 협의 하에 정합니다.
- ② 보험회사가 위 제1항의 통보를 받고 이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자의 서류 또는 장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위 제1항의 통보를 하지 않거나 위 제2항의 협조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때에는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이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이미 통보되어 보험료가 정산된 대리운전 운행 건을 제외하고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제7조(보험료의 정산)

-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과거 대리운전실적에 따라 제시한 예납보험료를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위 제1항의 월별 예납보험료를 이 특별약관 '제6조(대리운전 현황의 통보)'에 의하여 보험회사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정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의 정산에 따라 예납보험료와 정산보험료와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드리며,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3개 월까지는 이미 정산한 보험료에 차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청구하여 더 받거나 돌려드립 니다.
-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위 제1항의 예납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거나 위 제2항의 정산보험료 중 보험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할 차액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자가 예납보험료 또는 정산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회사는 당해 예납보험료 또는 정산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의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제8조(보험계약의 해지)

- ①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효력 발생일자를 명기한 서면에 의하여 해지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 ② 위 제1항의 해지통보는 해지하고자 하는 일자로부터 7일 이전에 발송하여야 합니다.

#### 제9조(보험기간)

보험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개시되는 마지막 날의 24시에 끝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